



# 원주푸른숨3단지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 무순위 동·호추첨 | 온라인(PC·모바일) 청약 | 공고일 : 2026. 04. 14. | 주택관리번호 2026000139 ]

## ■ 공급대상 : 원주푸른숨3단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배울로 50) 총 35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매각공고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일반매각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매각공고일(2026.04.14.) 현재 원주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1세대 1명을 말함.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모집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매각공고일은 2026.04.14.(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가능연령,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거주지역,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 공사(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가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하고 퇴거하여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는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후 발견되는 시설물(디지털도어락, 세대열쇠, 공동현관 카드키,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전기·전자제품,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및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여건,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본인이 주택개방일에 현장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주택 상태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고는 무순위 동호추첨 공고로, 특정 호수를 선택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동호 무작위 전산추첨 배정**).
- **[재당첨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 없이 기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당첨일부터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사전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 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매각공고문의 신청 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 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2조 제3항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 전산 검색을 통해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소명 기간(LH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객관적인 증명(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예비자 당첨 포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을 부과(공제)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당첨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당첨자와 계약자가 일치하여야 함)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하는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매각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주택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 및 등기소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후 미분양 세대는 추후 공급조건(분양가격, 대금납부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일정(자세한 일정 등은 공고문 하단 참조)**

공고	주택 사전 개방	신청접수	당첨자(예비자) 발표	당첨자(예비자) 서류 제출	당첨자 주택개방	당첨자 계약체결
'26.04.14.(화)	'26.04.21.(화) 10:30 ~ 15:3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26.04.23.(목) 10:00 ~ 04.28.(화) 16:00	'26.05.04.(월) 14시 이후	'26.05.06.(수) ~ 05.11.(월)	'26.05.27.(수) 10:30 ~ 15:3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26.06.04.(목)~06.05.(금) 10:30 ~ 15:3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주택형별 샘플세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현장접수 불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등기우편 제출 *마감일까지 도달분만 인정	당첨 동호 주택	LH원주권주거복지지사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26, 3층

I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대상 주택 및 가격

■ 공급대상 : 총 35세대 (74A형 1세대, 84A형 31세대, 84B형 3세대)

\* 단지규모: 총 10개동 728세대, 준공년도: 2015년, 난방방식: 개별가스

주택형	동	호	세대당 계약면적(m <sup>2</sup> )						주택가격(원)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계	계약금(10%)	잔금(90%)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074.95 00A (74A형)	307	1003	74.9500	21.7965	96.7465	3.5717	21.2006	121.5188	206,000,000	20,600,000	185,400,000
084.91 00A (84A형)	301	703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3,000,000	22,300,000	200,700,000
	301	1101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1,000,000	22,100,000	198,900,000
	302	502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1,000,000	22,100,000	198,900,000
	302	603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4,000,000	22,400,000	201,600,000
	302	1403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30,000,000	23,000,000	207,000,000
	302	1902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15,500,000	21,550,000	193,950,000
	303	701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3,500,000	22,350,000	201,150,000
	303	1801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34,000,000	23,400,000	210,600,000
	304	404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14,000,000	21,400,000	192,600,000
	304	703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7,000,000	22,700,000	204,300,000
	304	903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9,500,000	22,950,000	206,550,000
	304	904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3,000,000	22,300,000	200,700,000
	304	1103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32,500,000	23,250,000	209,250,000
	304	1104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5,000,000	22,500,000	202,500,000
	305	1701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34,000,000	23,400,000	210,600,000
	306	504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17,500,000	21,750,000	195,750,000
	306	603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5,500,000	22,550,000	202,950,000
	306	604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0,000,000	22,000,000	198,000,000
	306	903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9,500,000	22,950,000	206,550,000
	306	1601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32,500,000	23,250,000	209,250,000
	308	502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5,000,000	22,500,000	202,500,000
	308	901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6,000,000	22,600,000	203,400,000
	308	1004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3,000,000	22,300,000	200,700,000
	308	1601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8,000,000	22,800,000	205,200,000
	308	2001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0,500,000	22,050,000	198,450,000
	309	402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0,500,000	22,050,000	198,450,000
	309	602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5,500,000	22,550,000	202,950,000
	309	1002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33,500,000	23,350,000	210,150,000
309	1004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33,000,000	23,300,000	209,700,000	
310	1002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32,500,000	23,250,000	209,250,000	
310	1504	84.9100	24.6930	109.6030	4.0464	24.0180	137.6674	225,000,000	22,500,000	202,500,000	
084.94 00B (84B형)	303	2002	84.9400	24.7018	109.6418	4.0478	24.0264	137.7160	220,500,000	22,050,000	198,450,000
	304	102	84.9400	24.7018	109.6418	4.0478	24.0264	137.7160	206,500,000	20,650,000	185,850,000
	305	2002	84.9400	24.7018	109.6418	4.0478	24.0264	137.7160	222,500,000	22,250,000	200,250,000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습니다. (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sup>2</sup> × 0.3025 또는 m<sup>2</sup> ÷ 3.3058)

※ 주거전용 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 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 사전 개방(주택형별 샘플세대)

일시	장소	방문 방법
2026. 04. 21.(화) 10:30 ~ 15:3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배울로 50	307동 또는 303동 공동현관 앞 (보안 문제로 직원 확인 후 출입 가능)

※ 주택 사전 개방일 이외의 날에는 주택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주택 사전 개방일에 주택을 확인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에 한해 계약체결 전 당첨주택 상태확인을 위한 주택개방 1회 추가 실시)

※ 주택형별 샘플세대 : 74A형 307-1003, 84A형 303-1801, 84B형 303-2002

2. 분양대금 등 납부 방법

■ 분양대금(①계약금 + ②잔금) 및 ③관리비예치금 【①~③전액 완납 후 입주 가능】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 국민은행 682401-83-003384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식별을 위해 반드시 "계약자명+동호"으로 입금 요망 (예시 : 홍길동301-701)

① 계약금 : 계약체결 시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

② 입주잔금 : 잔금 납부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일시납(선납 할인 미적용)

- 입주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잔금 납부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계약금 납부계좌와 동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대출 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 조달(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일수에 따라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 및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잔금 납부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도 발생합니다(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7.5% (변동 가능) ]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 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공제)하여야 합니다.
- 계약 당일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하며, 잔금 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합니다(교부희망일로부터 최소 7일전 신청, 자세한 절차는 공고문 9페이지 참고).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택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융자금) - 선택사항

- 본 주택은 LH가 주택도시시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으로, 계약자가 희망할 경우 대환대출(융자금 채무자 명의를 LH에서 계약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진행을 원할 경우, 대환담당은행(지점) 방문 상담 후 기금융자금 대환일까지 융자금 외 잔금을 일시 완납하여야 함.  
- 대환대출 심사에 상당기간 소요되오니 잔금완납기한을 고려하시어 사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 시 융자금 대환은행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 세대별 융자금액·상환기간·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융자금 일시납의 경우 대환절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는 불필요하며, 분양계약서에 융자금(주택도시시기금)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표기합니다.
- 대환대출 진행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담당 은행(우리은행 원주금융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당 주택도시시기금(융자금)		상환기간	이자율	담당 은행 지점
전용면적 74㎡, 84㎡	75,000,000원	20년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연 2.8% (변동 가능)	우리은행 원주금융센터 ☎ 033-764-1102 (내선320,323)
공고일 기준, 매월 변동				

• 이외 기타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확인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관리비예치금 : 입주 시 납부하며, 금액 및 납부 계좌는 원주푸른숨3단지 관리소로 문의(☎033-733-0729)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

■ 입주 잔금(융자금 포함) 및 관리비예치금 완납이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세대 열쇠가 불출되며, 입주지정기간 이내 입주 시에는 입주일(열쇠 불출일)부터,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매각공고일(2026.04.14.) 현재 원주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법인 및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범위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에서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계약체결 불가, 계약취소 등)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예시)①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여러 단지에 청약 신청한 경우 → 중복 청약으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 ② 주택공급신청자 본인과 세대구성원이 동일 단지에 청약 신청한 경우 →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동일세대 1인만 신청가능]
- ③ 주택공급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 단지에 청약 신청한 경우 → 중복 당첨된 경우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주택만을 인정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 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당첨자(예비자) 선정 및 동·호 배정 방법

■ 당첨자(예비자) 선정 및 동호 배정 방법

- 금번 모집공고는 무순위 공급으로 당첨자와 예비자는 신청형태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결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축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명단관리 됩니다. (공고문 1페이지 내용 참조)

■ 예비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1배수의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 시 선정한 예비 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 체결
- ※ 주택형별 잔여주택 2호 이상 동시 발생 시, 전산에 의한 추첨으로 동호배정하여 계약 진행
- ※ 예비자는 계약체결한 경우 당첨자로 명단관리 됩니다.
- 예비자의 지위는 금회 공고에 한하며, 미계약 잔여세대가 없는 경우 예비자 지위는 삭제 처리됩니다.

### 3.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 자격(해당 지역 거주 여부, 세대 구성원, 무주택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취소),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 없이 기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사전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28조에 의거하여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의 지위와 부여된 순번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소멸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외는 1년, 수도권외는 6개월, 수도권외이지만 투기·청약과열지구인 경우 1년, 위촉지역은 3개월]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III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첨자 발표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 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당첨자(예비자)는 판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 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불가한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 여부 판단 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고문 4페이지 참고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 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 산정 기준

- 주택 소유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해당 조항의 소명자료로 해당 건물이 속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에는 반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함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발급기관 자체 양식에 따른 해당 문구 미포함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하며, 소명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에는 불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서 정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IV

### 신청일정 및 방법

#### 1. 신청일정

순위	신청 일정	신청 방법
무순위	2026. 04. 23.(목) 10:00 ~ 04. 28.(화) 16:00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LH청약플러스(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또는 LH청약플러스 모바일앱 ]

#### 2. 신청방법 [온라인(PC·모바일) 신청만 가능, 현장 방문신청 불가]

##### ■ 온라인(PC·모바일)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에 위하여 신청일 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유의사항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개인 PC 또는 모바일 환경 등에 의하여 청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청약신청자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청약신청 완료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당첨자(예비자) 발표 및 서류제출**

1. 당첨자(예비자) 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당첨자(예비자) 및 동호추첨 결과 발표	무주택 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자)	당첨자 계약체결
2026. 05. 04.(월) 14시 이후	2026. 05. 06.(수) ~ 2026. 05. 11.(월) ※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능 ※ 제출마감일까지 도달완료된 우편물만 제출 인정	2026. 06. 04.(목) ~ 06. 05.(금) 10:30~15:3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LH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일반매각 담당자 앞	(장소) LH원주권주거복지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양지로26, 하나로마트 3층

※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LH청약플러스 앱에 게시하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 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당첨자 및 예비자는 서류제출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미제출 시 자격 검증이 불가하여 계약 및 예비자지위 포기로 간주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 자격검증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주택소유 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부적격 소명요청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하여 재당첨제한 적용대상)로 간주됩니다.
- ※ 소명, 계약체결, 예비자 계약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안내하오니,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으로 유선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예비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예비자) 제출서류 **【제출기간 내 등기우편 도달분까지 인정】**

■ 공통 안내사항

- 신청 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매각공고일(2026.04.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이력 등의 정보는 '전부 표기'로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 **열람용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해당자만 제출 • <b>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b>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b>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b>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양식은 LH청약플러스 매각공고에 별도 첨부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유형)	본인	※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전체공개하여 발급 • <b>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b>
○		⑤ 무주택 서약서	본인	• 미제출 시 신청 불가(양식은 LH청약플러스 매각공고에 별도 첨부)
	○	⑥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본인	※ 해당자만 제출 • <b>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b>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서류 결격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당첨자 주택개방

일시	장소	방문 방법
2026. 05. 27.(수) 10:30 ~ 15:30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개인별 당첨 동호 주택	추후 안내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 공사(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가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하고 퇴거하여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는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후 발견되는 시설물(디지털 도어락, 세대열쇠, 공동현관 카드키,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전기·전자제품,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및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개방일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은 잔여주택에 대한 예비자 주택개방 일정은 예비자 본인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VI**      **당첨자 계약 체결**      ※당첨자 미계약 주택에 대한 예비자 계약일정은 개별 통보예정

**1. 계약 체결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주소
2026. 06. 04.(목) ~ 2026. 06. 05.(금) 10:30 ~ 15:3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LH원주권주거복지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양지로26, 하나로마트 3층

■ 계약체결일 마감시간 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제한 적용대상)로 간주됩니다.

**2.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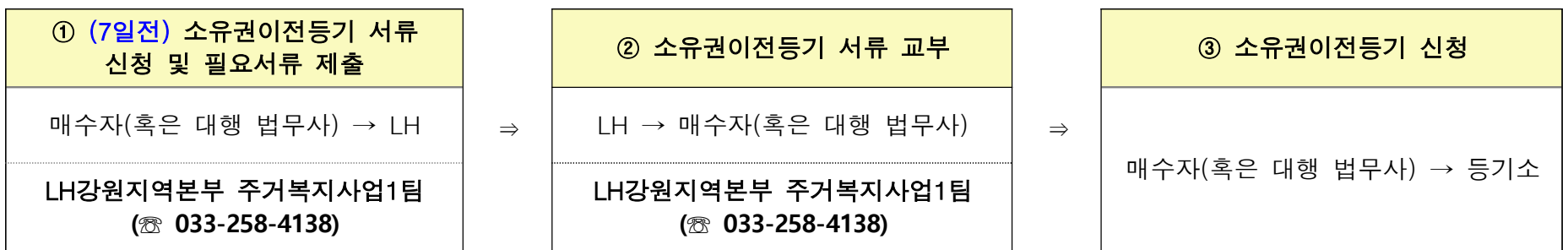
■ 아래의 계약서류는 **매각공고일(2026.04.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구분	계약서류
필수 서류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지정 계좌로 입금 후 내방, <b>현장수납 불가</b> )
	② 당첨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③ 당첨자의 인감도장 (본인 계약 시 본인 서명날인 또는 일반도장 사용가능)
	④ 주택상태 확인서 * LH청약플러스 매각공고에서 출력 또는 계약 장소에 비치 ※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계약 시 계약자 본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동일) 날인 또는 자필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류로 제출
추가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배우자 포함)로 간주되며, 아래 서류 추가 제출(인감증명 방식 또는 서명확인 방식)
	<b>[인감증명 방식]</b> ① 당첨자의 위임장(당첨자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b>인감 날인</b> ) * 위임장 양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출력 또는 계약 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용도 : 분양계약위임용) ③ 당첨자의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④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b>[서명확인 방식]</b> ① 당첨자의 위임장(당첨자가 직접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자필서명할 것) * 위임장 양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출력 ② 당첨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V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소유권 이전 등기**

-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고, 해당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잔금 완납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는 법무사를 알선하지 않습니다.)
- 등기서류 교부희망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이 필요하오니 대출실행, 등기신청업무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을 또는 기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담당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 진행하므로,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추후 제3자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세 등은 관련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지방세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기타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 고객 청약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 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중 누락 및 오류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시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매각공고문의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람,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예비순번대로 개별 통보받아 계약체결한 예비자도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주택(사전)개방일에 세대 내부·단지·현장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및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 및 수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일부세대는 구조와 내부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반드시 해당 세대를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하자보수 및 재시공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별도의 보수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계약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으로 금번 분양주택의 가격은 건물의 노후화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가격이므로 시설물의 교체, 추가설치 또는 수선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 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개인정보 변경]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b>분양 문의</b>	<b>LH 콜센터 ☎ 1600-1004 또는 ☎ 033-258-4108, 4138</b> * 상담시간 : 평일 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2026. 04. 14.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